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기관의장

람

제1767회 2023. 7. 18.(화)

차 례

공 고

○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4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

1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-1546호

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(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)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7. 1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공 고 기 간 : 2023. 7. 18. ~ 2023. 8. 1.(15일간)

2. 공 고 내 용

1. 행정처분 제목	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			
2. 대상차량	등록번호	47거7346 등 7건(붙임 참조)		
	차 명			
3. 운행정지사유	소유자의 요청 등			
4. 법적근거	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			
5. 관할관청	기관명	인천광역시 서구청	담당부서	차량민원과
	주소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(심곡동) (☎ 032-560-4875, FAX 032-560-2793)		

3. 유 의 사 항

- 1)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2)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3)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(무등록 자동차)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4.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(☎ 032-560-4875)

■ [붙임]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

연번	자동차등록번호	차명	소유자명	운행정지명령 등록일
1	47거7346	SM5	서*원	2023.06.27
2	335버8558	Mercedes-Benz E350 4MATIC	**캐피탈(주)	2023.06.27
3	176버5555	Mercedes-AMG G63	**캐피탈 주식회사	2023.06.23
4	378서9087	GLC300 4Matic Coupe	**캐피탈(주)	2023.06.16
5	50어6902	아반떼오토메틱	조*영	2023.06.14
6	67더3246	쏘울	우*환	2023.06.13
7	22무4776	BMW 528i	한*은	2023.06.13
8	102구4721	싼타페(SANTAFE)	**캐피탈(주)	2023.06.07